

의안번호	제 722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17. 10. 24. (제 359 회)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연월일	2017. 10. 12.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22
----------	-----

제출연월일 : 2017년 10월 12일
제출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결산검사위원의 실비보상 지급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결산위원의 실비보상 지급 근거와 기준 보완(안 제10조)

- (별표 2) 일비 → 수당으로 변경

여비 : 근무지내 20천원, 근무지외 36천원/일

※ '근무지내' 기준 설정 : 청주시내 또는 결산검사장에서 12Km이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 : 붙임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실제비용 보상) ① 검사위원에게 별표2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검사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실제비용 보상은 결산검사 기간이 끝난 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③ 검사위원에 대한 실제 비용보상은 위촉 기간 중 결산검사 개시일부터 결산검사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도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을 포함한다.

제11조, 제12조, 조13제를 삭제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의 수당·여비 지급 기준

구 분	액 수
수 당	130,000원/1일
여 비	근무지내(20,000원)/ 1일 근무지외(36,000원)/ 1일

※ ‘근무지내’ 라함은 청주시내 또는 결산검사장에서 12km 이내를 말함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수당의 지급)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제10조(실제비용 보상)①검사위원에게 별표2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검사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된 후 일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실제비용 보상은 결산검사 기간이 끝난 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신설)	③검사위원에 대한 실제비용 보상은 위촉 기간 중 결산검사 개시일부터 결산검사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도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④제3항에 따른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을 포함한다.
제11조(수당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중에서 결산검사 개시일로부터 결산검사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도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삭제>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현행	개정안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u><삭제></u>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는 별표 2에 의하여 지급한다	<u><삭제></u>												
<u>별표 2]</u> <table border="1" data-bbox="188 1008 774 1245"> <thead> <tr> <th>구분</th> <th>액 수</th> </tr> </thead> <tbody> <tr> <td>일비</td> <td>130,000원/1일</td> </tr> <tr> <td>여비</td> <td>「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여비지급 구분표상 제1호 상당액</td> </tr> </tbody> </table>	구분	액 수	일비	130,000원/1일	여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여비지급 구분표상 제1호 상당액	<u>별표 2]</u> <u>위원의 수당·여비 지급 기준</u> <table border="1" data-bbox="826 1008 1412 1245"> <thead> <tr> <th>구분</th> <th>액 수</th> </tr> </thead> <tbody> <tr> <td>수당</td> <td>130,000원/1일</td> </tr> <tr> <td>여비</td> <td>근무지내(20,000원)/ 1일 근무지외(36,000원)/ 1일</td> </tr> </tbody> </table> <p>※ ‘근무지내’라함은 청주시내 또는 결산 검사장에서 12km이내를 말함</p>	구분	액 수	수당	130,000원/1일	여비	근무지내(20,000원)/ 1일 근무지외(36,000원)/ 1일
구분	액 수												
일비	130,000원/1일												
여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여비지급 구분표상 제1호 상당액												
구분	액 수												
수당	130,000원/1일												
여비	근무지내(20,000원)/ 1일 근무지외(36,000원)/ 1일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매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결산검사
-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결산검사 실시

2. 비용 발생 요인

- 결산검사위원 결산검사 실시에 따른 수당 및 여비

3. 관련조문

-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3조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결산검사위원 선임(5인 이상 10인 이내)
- 위촉기간(20일 이내)
- 결산검사 실시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18	'19	'20	'16	'17	계
계	33,200	33,200	33,200	33,200	33,200	33,200
결산검사위원 수당	26,000	26,000	26,000	26,000	26,000	26,000
결산검사위원 실비보상	7,200	7,200	7,200	7,200	7,200	7,200

다. 재원조달방안

- 매년 결산검사 실시에 따른 경비 당초예산 확보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6. 작성자 :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남 연 옥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해	당	없	음		
세 출	33,200	33,200	33,200	33,200	33,200	33,200
결산검사위원 수당	26,000	26,000	26,000	26,000	26,000	26,000
결산검사위원 실비보상	7,200	7,200	7,200	7,200	7,200	7,200
재원 조달	33,200	33,200	33,200	33,200	33,200	33,2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도 비	33,200	33,200	33,200	33,200	33,200	33,200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구·군비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감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34조에 따른 감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84조(결산 검사 사항) ① 감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감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감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결산 검사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